



Web Contents



2024년 05월 05일 00시 28분

지방세 상담 챗봇

인터넷지방세

지방세 질문과 답변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재산세에 관련하여

2012.08.23 조회수 59 등록자 양다열

무허가 건물의 재산세 납부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에 관련하여에 대한 답변

작성자 최경순 작성일 2012.08.24 10:52

[원본글]

양다열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재산세에 관련하여

무허가 건물의 재산세 납부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지방세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이하생략)

위 규정에 의거 무허가 건물의 재산세 납부자 명의를 변경하시려면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

서, 재산의상속분할 협의서, 재산의 양도증서 등 해당되는 증거자료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리시 세정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재산세담당자(전화 270-3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쓰기

목록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

